

# 韓國·日本·台灣의 석유정책과 석유제품가격

趙 基 成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화공기좌)

## I. 머리말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의 흑자규모 확대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경제처방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즉, 外貨보유액의 증가에 따른 행복한 고민임을 느낄때 근래의 국제유가하락이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로 크게 타격을 받은 經濟各部門의 주름살을 상쇄시키고 남음이 있었음을 느끼게 한다. 물론 여기에는 油價 이외의 많은 要因이 있지만, 國際原油價의 하락에 따른 효과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原油價 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먼저 原油輸入代錢의 감소로 國際收支의 개선을 가져오고, 다음으로 국내석유제품가격을 통하여 수송, 제조업등 하방경제의 원가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등 경제여건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한다. 그동안 석유류 수입액은 81년 69억달러에 달하던 것이 86년에 34억달러, 87년에는 47억달러로 22~35억달러가 감소하여 總輸入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1년 26.6%에서 87년 11.6%로 격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석유류수입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국제수지개선과 이에 상당한 금액의 소비자부담이 경감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국제原油價의 변동은 어떤 형태로든 그 나라의 경제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다

만 그 나라의 에너지사정, 경제여건에 따라 가격 인하의 폭, 시기, 油種間 배분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국제原油價의 변동효과도 다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油種의 가격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하락하였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는 편협적인 인식이 되고 만다.

따라서 全石油製品의 平均價格이 어느 정도 되며, 내가 사용하는 油種은 이 평균가격보다 높은 것인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를 비교해 보면 국내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日本, 台灣등 3국에서의 석유가격 결정방법과 결정된 석유제품 가격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석유제품가격의 수준을 파악해 보고 동자료가 향후 석유제품가격 관련 비교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韓國·日本·台灣의 석유정책

### 1. 특 징

韓國, 日本, 台灣은 中東산유국으로부터의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등 需敎文化圈의 영향

이 직·간접으로 석유정책에 투영되고 있다.

이들 3국에서의 공통적 특징은 형식이야 어떻든 다같이 정부가 석유제품가격결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석유제품가격이 제조업등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석유제품가격을 서로가 눈치를 보듯 조정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台灣의 경우, 국내油價의 인하폭과 시기에 있어 경쟁적으로 조정하여 왔으며, 제품가격의 수준과 유종별 소비비중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석유제품의 가격구조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을 활용하여 부족제품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동 석유시장이 燈油고가형 제품시장인데 반해 이들 나라에서는 燈油低價, 휘발유 高價型的 유종간 가격구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日本의 경우 산업경쟁유종인 B-C油의 경우, 국제가격에 연동되고 있으며, 타유종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목소리가 비교적 높아 전국균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근래에 들어와 석유정책 전반에 걸친 自由化의 추진이 韓國, 台灣에 비해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또한 이들 3方의 油價제도의 개요는 台灣이 석유제품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품목을 정부에서 직접 통제운영하는데 반해, 日本은 행정지도를 통한 전품목을 自由化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교적 日本에 접근한 중간과정에 있다.

유가제도 개요

	台灣	韓國	日本
기본 원칙	• 전제품 정부 직접 통제	• 필수유종만 정부 간접통제 • 비경쟁유종은 자유화 또는 연동	• 자유시장가격제도에 행정지도 가미
가격결정 및 油價管理	• 台灣석유공사에서 직접 유종별가격 산정고시	• 정유5사가격기준으로 정부가 가격 고시	• 민간정유회사가 가격고시 • 정부는 행정지대로 부당한 편승인상만을 방지
가격 관리 대상 유종	• 전제품	• 항공유, 용제, 나프타는 자유화 또는 연동하고 기타 유종 통제	• 나프타, B-C油는 연동하고 기타 유종은 자유화

2. 韓國

그 동안의 우리나라 석유가격 정책은 한마디로 공급안정에 초점을 두었다. 1964년 석유제품의 국내생산 이래 경제성장등에 따른 제품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공급방안에 역점을 둔 한편, 가능하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정부의 직접규제 방식에서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83년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적은 油種으로서 항공유와 용제를 선택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도록 자유화하였고, 85년부터는 국내 석유화학의 국제경쟁력, 석유화학업계와 정유업계의 상반된 나프타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나프타가격의 국제가 연동제를 실시하여 국내석유제품수요의 약 18%를 사실상 자유화하였다. 따라서 이들 유종은 상거래와 국제석유시장의 가격에 따라 국내가격이 공급자와 수요자사이에 임의로 형성되고 있다.

한편 현재 통제대상유종은 정부가 국내 5개 정유사의 原價를 기초로 하여, 이들 유종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각 제품별 가격을 산정 고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종의 소비특성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하여 가급적 低價 또는 高價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와같은 일부유종에 대한 편협적인 低價 또는 高價유지는 과거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나, 최근에 들어와 경제의 질적 성장, 배분, 규모의 확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原油가격제도에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내油價의 原油價, 환율연동제등의 油價제도에 관한 사항들은 대부분이 사실상 82년 이후 경제, 사회적 환경이 허락되는 한 지속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으로 방법상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이들 통제유종도 자유화 될 것으로 믿어진다.

3. 日本

日本 석유정책은 石油의 장기수급전망에 따른 안정공급에 우선을 두고, 가격정책은 2번째로 취급하는 것이 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즉 석유제품의 장기수요관리에 따른 가격정책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87년에 발표한 「90년대를 향한 석유산업, 석유정책」이란 石油審議會 보고서와 최근의 石油稅인상(안)으

로 미루어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石油비축수준과 石油공급위기지 대응체제의 정비노력에 정책의 상당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日本の 석유정책을 부문별로 요약하면,

(1) 石油業法

○1962. 5. 石油業法 제정(중래의 환무역 관리법에 따른 통제는 폐지)

- 석유정제업 및 정제시설의 신·증설 허가
- 석유제품 판매업 및 수입업의 신고
- 매년 당해년도 이후 5년간의 石油공급계획 결정
  - 공급계획에 따라 원유처리지도 및 생산조정
- 필요시 판매가격의 표준액 결정 고시

(2) 油價 제도

○2차 석유위기에 따른 편승가격 인상방지 목적으로 에너지廳이 각사의 가격인상폭을 산정하는 Ceiling Price제도 도입(1979—1982)

○82년이후 Ceiling Price제도 철폐도 형식적으로는 자유화이나 에너지廳의 사후가격승인등 행정지도 가미

(3) 유통구조

○생산과 판매의 분리

- 元賣회사는 原油를 수입하여 정제사에 정제위탁(정제사 생산)
- 생산된 제품은 元賣社가 전량 인수하여 특약점에 판매(원매사 판매)

○따라서 元賣社를 중심으로 한 석유제품의 판매계열화 형성

(4) 주요 행정지도

○석유업법, 휘발유판매업법 등과 관련하여 通産省이 행정지도를 통해 석유산업 통제

- 原油처리, 휘발유생산량 지도로 제품생산량과 수입량의 규제
- 주유소 건설지도(Scrap & Build)
- 특정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의 수입에 대한 지도 등이다.

이와같은 현행석유정책에 1990년대 石油수급의 꺾박

예상, 강인한 석유산업의 경영기반확립 및 비상시를 대비한 안정공급기반 구축이라는 주요 기치아래 石油業法에 의한 통제완화로 정유업의 자율경쟁에 의한 원가절감등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행 原油수입가격(CIF+관세)의 4.7%인 石油稅를 kℓ당 2,040원의 從價稅로 변경함으로써 현행보다 약 2.5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추가인상재원을 石油비축, 석유개발, 代替에너지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석유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 미래의 석유제품을 低價로 공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급우선, 가격차선의 석유정책이며, 석유제품의 유통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日本의 석유제품을 高價유지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4. 台灣

台灣의 국내油價는 국영인 中國石油公司(LPC)가 석유제품은 물론 석유화학 기초제품까지 원가를 산정,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프타등 특정중간제품의 경우, 가격이 있어도 사실상 타경쟁국의 제품가격과 비교하기가 난해하며 가격의 실질적 의미가 없다.

석유제품의 가격은 原油도입비용과 제품판매수익의 차이를 중국석유공사에 유보, 이중 일정액(88 회계년도의 경우 387억NT\$로 알려짐)을 법정잉여금으로 정부에 납입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정유시설 또는 석유관련한 에너지대체사업등 석유산업에 투자하거나 잔여금액에 상당한 국내석유제품가격을 인하한다. 반대로 잔여액이 없을 경우는 국내油價의 변동요인이 없게 되며, 법정잉여금의 정부납입을 못하게 될 경우, 국내油價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台灣의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특정시점에서의 原價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原油도입등의 비용과 제품 판매 수입의 차이를 관세 또는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하게 되나, 台灣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중국석유공사에 흡수하게 된다.

참고로 88회계년도 87년 1월부터 88년 6월까지의 추정 중국석유공사의 총이익잉여금은 약 540억 대만달러로 이중 387억대만달러를 법정잉여금으로 정부에 납입하게 되며, 나머지 153억대만달러인 법정초과잉여금은 油價인하재원 또는 석유산업관련 투자재원이 되는 것으로 이

재원으로 87년 12월 국내油價를 세후 9.24% 인하한 바 있다.

한편 석유제품의 유통에 있어서는 주유소등 제품 판매소를 중국석유공사가 직접 경영하고 있어 유통마진이 없으며, 이 판매비용은 정부에 납입하는 법정잉여금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즉 석유제품의 판매비용이 稅前가격에 반영된 셈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언급될 석유제품의 세전가격 수준을 보면, 台灣의 경우 韓國, 日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韓國 · 日本 · 台灣의 석유제품가격

#### 1. 稅前價格

석유제품가격이 갖고있는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連產品(Joint Products)이라는 점이다. 즉 쇠고기 가격처럼 한마리의 소를 매입할 때부터 등심, 안심 등의 原價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맛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처럼 原油도 도입가격에 도입시 부담하게 되는 제세공과금을 더한 단일가격을 모수로 하여 생산된 제품의 특성과 수요, 그 나라의 에너지사정 및 경제환경에 따라 各 油種別 價格을 임의로 결정하게 된다.

#### 韓國 · 日本 · 台灣의 세전공장도가격 비교

(단위: \$ / B)

	韓國	日本	台灣
原油도입가(CIF)	18.15	18.0	17.88
原油도입비용	1.66	2.72	1.66
관세등 제세	2.36	1.72	0.63
정제비등	2.38 <sup>a</sup>	1.93	7.50 <sup>b</sup>
유보	2.41 <sup>a</sup> (석유기금)	11.28 (정유사유보)	11.76 (석유공사유보)
計(세전공장도가격)	26.96	35.65	39.43
• 휘발유(보통)	43.0	62.79	75.76
• 등 유	34.32	33.52	54.02
• 경유(저유황)	30.99	33.27	50.62
• B-C油(저유황)	22.31	30.91	23.43
• LPG(\$ / t)	346	282	168

- 註: 1) 정유사 이윤 0.45\$/B 포함.  
 2) 현행기금중 일본, 대만과 동일한 의미의 유보기금  
 3) 법정잉여금 약 5.57\$/B 포함.

이를 韓國 · 日本 · 台灣의 87년 12월 가격 기준으로 실제 자료를 비교해 보면, 原油 1배럴(약 159ℓ)을 도입하여 정제할 경우, 제세공금과 정제비등을 포함하여 韓國 26.96달러, 日本 35.65달러, 台灣 39.43달러가 되며, 정유사는 原油 1배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팔 경우, 판매수익으로 이 가격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비슷한 가격의 原油를 도입정제하는데 왜 日本, 台灣이 우리나라보다 세전가격이 높은 것일까?

표에서와 같이, 日本, 台灣의 경우 유보액이 크다. 日本의 경우 배럴당 약 11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제회사인 元賣社가 정제설비, 유전개발등의 비용 또는 일시적 原油價 변동에 대한 완충재원으로 유보하고 있어 환차익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민에게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대부분이 정제시설 고도화 등 원매회사의 투자재원등으로 잠식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台灣의 경우도 배럴당 약 11달러에 해당하는 재원(88 회계년도분으로 중국석유공사의 추정치임)을 유보중에 있으며, 이 재원으로 작년 12월 24일 국내油價를 세후 9.24% 인하한 바 있어 88년 6월까지의 대부분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제비에는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법정잉여금이 배럴당 약 5.6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국영인 석유제품판매소중업원의 급료등 우리나라의 유통단계에 해당하는 비용과 순수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으로 인해 세후 소비자가격에는 특소세, 부가세 이외는 일체의 어떤 비용도 부과(가정용 LPG용기판매는 제외)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의 세후 유통단계에서 부과되어야 할 비용이 세전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며, 우리나라 정유사의 이익으로 약 0.45\$/B를 인정한데 비해 중국 석유공사의 법정잉여금이 약 5.6\$/B로 더 훨씬 큼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도 세전가격이 低價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종별 세전가격구조로 보아 우리나라가 유종별

#### 유종간 가격구조(稅前)

(단위: 가격 \$/B, 지수: B-C油=100)

	韓國		日本		台灣	
	가 격	지 수	가 격	지 수	가 격	지 수
휘 발 유	43.0	193	62.8	203	75.8	324
경 유	31.0	139	33.3	108	50.6	216
B-C油	22.3	100	30.9	100	23.4	100

가격차이가 크지않은 반면, 日本의 경우는 휘발유 고가형을 유지하고, 台灣은 비교적 이상적인 가격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諸稅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제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그 나라의 석유제품 소비형태와 경제정책을 나타낸 것으로 日本의 경우 일부 유종에 비교적 과중한 세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세전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심한 격차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台灣은 稅係나 부과율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특수세 부과에 있어 우리나라가 휘발유에 100%로 크게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台灣은 12%로 他油種과 대차없이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며, 이로 인해 台灣의 경우 세전가격 구조가 큰 왜곡됨이 없이 세후가격구조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日本의 경우는 從量稅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특히 근래와 같이 低油價가 지속될 때는 세율비교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며, 국제原油價가 하락될수록 소비자가격은 상대적으로 타국에 비해 높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諸稅부과액은 석유제품 1배럴당 6.64달러로 台灣 5.51달러에 비해 다소 차이는 있으나, 日本의 15.85달러에 비하면 훨씬 작다. 특수세의 적용은 우리나라와 日本이 휘발유, 경유, LPG등 같은 유종에 부과하나, 台灣의 경우 전유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台灣의 경우 부과율이 작아도 세전가격이 높기 때문에 賦課額이 상대적으로 크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諸稅

	韓 國	日 本	台 灣
○특별소비세	3.59\$/B	15.85\$/B	3.48\$/B
휘발유	100%	87-110%	12%
경 유	9%	94%	10%
L P G	8%	55%	7.5%
B-C油	-	-	3%
○부가가치세	3.05 (전유종 10% 균일)	-	2.11\$/B (전유종 5% 균일)
計 (부과율%)	6.64\$/B (24.6%)	15.85\$/B (44.5%)	5.51\$/B (14.0%)

註: 日本은 중량세를 증가세(%)로 환산하였으며, LPG는 차량용에만 부과됨.

### 3. 稅後소비자가격

稅前石油製品價格이 결정되면 여기에 諸稅와 판매시에 부과되는 流通마진을 더한 것이 소비자가격이다. 어떤 油種에 稅額을 얼마만큼 부과하느냐는 그 油種에 대한 사회, 경제적 측면과 油種의 消費특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사한 共通點이 있는 것으로 휘발유의 경우, 高率의 특수세성격의 세금을 賦課하여 소비측면의 수요관리를 하고 있으나, 휘발유가 일반대중화되고 있는 美國등의 나라에서는 휘발유 수요도 전석유제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율도 타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다.

등유, 경유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형적인 서민유종으로 그동안 인식되어 왔으며, 가격 또한 세계적으로 보기도물게 低價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등유, 경유가 취사용이나 시내버스, 화물차량의 연료로 사용됨으로써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나, 이 부담액을 결과적으로는 휘발유등 他油種이 부담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輕油가 전석유제품 소비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가격을 1% 내릴 경우 휘발유 가격을 약 4% 인하할 수 있다.

한편 日本에서의 灯油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처럼 타유종에 비해 低價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유사한 일면이 있다. 즉 등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北海道の 석유 소비자 단체의 의견에 따라 灯油가격이 결정되며, 석유 정제회사인 元賣社의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결정을 유도하는데 가장 난해한 문제로서 현행 등유 가격에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도 서민유종에 대한 중요성과 低價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휘발유, 경유의 소비비중 및 가격

(단위: 수요%, 가격\$/B)

	휘 발 유		경 유	
	수 요	가 격	수 요	가 격
韓 國	4.0	103	31.0	42.0
日 本	16.0	144.4	11.5	92.8
台 灣	19.5	89.1	15.3	58.5
프 랑 스	24.3	139.6	14.4	98.5
西 獨	21.8	97.2	14.1	95.2
美 國	42.6	40.7	17.9	46.6

註: 프랑스, 西獨의 경유 수요와 가격은 차량용 기준임.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좌우하고 있는 휘발유와 輕油에 대한 소비비중과 가격을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수준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B-C油는 석유제품중 質이 낮은 한편 産業用 燃料라는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위해 각 나라가 低價유지하고

韓國 · 日本 · 台灣의 소비자가격 구조

(단위 : \$ / B)

	韓國	日本	台灣
세전공장도	26.96	35.65	39.43
諸 稅	6.64	15.85	5.51
-특소세	3.59	15.85	3.40
-부가세	3.05	-	2.11
유통수수료	5.46	45.54	-
計 (소비자가격)	39.06	81.19	44.94
휘 발 유	103.0(100)	144.4(140)	89.1(87)
등 유	43.0(100)	58.8(137)	61.3(143)
경 유	42.0(100)	92.8(221)	58.5(139)
B-C油	26.4(100)	32.5(123)	25.3(96)

註 : ( )는 우리나라가격을 100으로 한 가격지수임.

주요국의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비교

(단위 : \$ / B)

	韓國	日本	台灣	프랑스	西 獨	美 國
휘 발 유 (보 통)	103.0(100)	144.4(140)	89.1(87)	139.6(136)	97.2(94)	40.7(40)
등 유 (100)	43.0(100)	58.8(137)	61.3(143)	-	-	-
경 유 (저유황)	42.0(100)	92.8(221)	58.5(139)	98.5(235)	95.2(227)	46.6(111)
B-C油 (저유황)	26.4(100)	32.5(123)	25.3(96)	23.6(89)	21.8(83)	15.7(59)

註 : ( )는 한국을 100으로한 지수임.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85년말 이후 3 차례의 가격인하 때마다 제일 큰 폭으로 인하하였으나, 각 나라와 비교할 경우, 같거나 약간 높은수준에 있다.

그러면 석유제품의 수율을 감안한 평균복합단가, 즉 原油 1 배럴을 정제하여 생산된 제품 1 배럴을 소비자가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약 39 달러로 台灣 45달러, 日本 81달러에 비해 배럴당 6달러 이상이 低價임을 알 수있다.

IV. 맺는말

우리나라의 油種別 제품가격은 휘발유와 B-C油가 日本보다는 低價이며 台灣, 프랑스, 西獨등과는 비슷한 수준인 반면, 輕油의 경우 제일低價를 유지하고 있어 복합으로도 제일低價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1,2차 석유위기에 겪었던 高油價에 대한 인식의 연속과 100%라는 高率의 휘발유 특소세에 따른 휘발유 가격의 他油種에 비한 상대적 高價로 우리나라의 全석유제품이 높다고 막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평상시 행복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 것은 우리 주변의 좋은 점을 인식하려 하지 않고, 나쁜 점만 자꾸 생각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현재로서는 소비량도 4%에 지나지 않는 휘발유 가격으로 미루어 모든 석유제품이 비싼 것 처럼 여기고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低價인 등유, 경유가격이 싸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자를 지금까지 거의 한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제일 가까이 접촉하고 있는 것이 휘발유이고 보면, 이러한 그릇된 편견이 재인식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의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인식은 하루 빨리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

